

#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제 안 설 명 서

제출년월일 : 1992. 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1. 개정사유

소규모학교 통·폐합 계획에 의한 분교장폐지와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역학교 : 남한강국민학교, 충주대림국민학교
- 나. 분교장 폐지학교 : 남이국민학교 구암분교장

### 3. 개정근거

- 가. 충주시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( '92. 1. 18. 조례 제1356호 )
- 나. 교육법 제82조 ( 설립자 )
- 다. 교육법 제85조 ( 학교의 설립.폐지 )